

# 평창군반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6.  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정부의 행정규제정비에 부응하고 현실성 있고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반장위촉 자격을 완화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○ 반장위촉 자격의 완화

- "관할구역안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"의 규정중 거주기한 폐지
- "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"의 규정중 60세 상한연령 삭제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평창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중 "반장은 관할구역안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중"을 "반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자중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반장) ①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반장은 관할 구역안에 <u>6개월이상 거주한 자로서 20세이상 60세이하의 자중</u>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·여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,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·면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지역전투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위촉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	<p>제5조(반장) ①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 . . . .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세이상의 자중 . . . . .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
# 관계법령발췌서

## 지방자치법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

⑥제5항의 행정동·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 
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